

기초종목육성 지도자 관리지침

제 정 2021. 01. 29.

개 정 2023. 01. 20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대한장애인체육회 (이하 “장애인체육회” 라 한다) 정관 제7조 6항에 의하여 매년 운영하는 장애인 기초종목 육성사업(이하 “기초종목육성” 라 한다)에 관한 제반 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‘23.01.20.>

제2조(적용대상) 이 지침은 중앙경기단체(이하 “경기단체” 라 한다)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에서 선임하는 해당 경기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기초종목육성 지도자(이하 “지도자” 라 한다)에 대하여 적용한다.<개정 ‘23.01.20.>

제3조(채용절차) ① 지도자는 해당 경기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의 공개채용에 의해 전문체육위원회의 평가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단체장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장이 채용하고, 채용결과를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때, 채용평가 과정에서 경기단체와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상호 협업하여 참여해야 한다. <개정 ‘23.01.20.>

② 공개채용 시 해당 경기단체와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상호 간에 공문으로 공지하고, 해당 경기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최소 10일 이상(공휴일 포함)의 채용접수기간을 두어야 한다.<개정 ‘23.01.20.>

③ 경기단체와 시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채용하고자 하는 지도자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경기단체에 그 사실 유무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동일 종목의 비장애인경기단체에 대해서는 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경기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채용하고자 하는 지도자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정보시스템을 통한 징계 관련 증명서를 제출받아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.<개정 ‘23.01.20.>

④ 채용 심사 시 경기단체와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상호 협업하여 지도자 평가와 검증할 수 있다.<신설 ‘23.01.20.>

제4조(자격요건) 기초종목 지도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해당종목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<개정 ‘23.01.20.>
2. 해당종목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5년 이상의 선수경력 또는 2년 이상의 장애인체육 실무경력(지도 및 행정)이 있는자<개정 ‘23.01.20.>
3. 삭제<개정 ‘23.01.20.>
4. 해당 종목 국가대표 은퇴자로 2급 장애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패

러림픽 대회 1회 이상 출전 또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자
제5조(채용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기초종목 지도자
가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7.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8.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(단, 승부조작, 폭력·성폭력, 횡령, 배임, 편파 판정으로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(시도지회 및 회원종목단체 포함)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는 영구히 지도자에 선임될 수 없다)
9.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, 직권남용,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자
10.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
11.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성추행,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한 지도자 중 자격정지를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 단,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

12. 장애인체육회, 가맹단체, 시·도장애인체육회,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기타 부정행위(부정선발, 담합, 금품 수수 등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와 강간,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자는 영구 결격
13.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
14. 부정부패 또는 비리 등의 행위로 퇴사하거나 징계 등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
15. 가맹단체(시도지부 포함) 임원 및 사무국장의 경우 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다.

제6조(직무) 지도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 다만, 국가대표, 후보선수는 기초종목 선수 선발 및 기초종목 선수 지도육성에서 제외한다. 또한, 기초종목지도자는 전·현직 국가대표, 후보선수, 실업팀 소속 선수를 선발·지도육성 할 수 없다. <개정 '23.01.20.>

1. 해당 종목 및 지역 선수 발굴·선발(평가)·지도 육성에 관한 업무. 단, 선수 선발(평가)에 대한 선발위원회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별도로 둔다.
2. 해당 종목 및 지역 선수 발굴 및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 성과 평가
3. 해당 종목 및 지역 선수 육성 중·장기 계획 수립 및 시행
4. 기초종목 육성 사업의 행정 지원에 관한 업무
5. 지도자 사업 수행의 실적 등 보고에 관한 업무
6. 기타 장애인체육회 지시사항 및 종목 행정 지원에 관련된 제반 업무 이행<개정 '23.01.20.>

제7조(경기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임무) 경기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는 해당 지도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의 업무를 담당하며 의견 공유 등 서로 협업하여 업무를 수행한다.<개정 '23.01.20.>

1. 해당 지도자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업무
2. 해당 지도자 관리, 업무 평가 및 지휘·감독 업무
3. 기타 지도자에 관한 제반 업무

제8조(채용계약) 지도자의 채용계약은 다음과 같다.

1.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'23.01.20.>
2. 경기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평가 등 소정의 채용절차를 거쳐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<개정 '23.01.20.>
3. 지도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복무규정을 현저히 위반할 경우 해당 경기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전문체육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<개정 '23.01.20.>
4. 지도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면직하거나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새로

운 지도자로 교체할 경우 계약기간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5. 연간 업무 평가 결과는 지도자 연임으로 인한 재계약 시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.<개정 '23.01.20.>

제9조(복무) ①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성실의 의무
2. 친절·공정·청렴 의무
3. 품위유지 의무
4. 비밀엄수 의무
5. 직장이탈 금지 의무

②지도자는 해당 경기단체 회장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회장, 각 주관단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하고, 경기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는 매월 근태관리 결과를 장애인체육회로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'23.01.20.>

③지도자는 선수 육성에 관하여 장애인체육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자문 및 지원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<개정 '22.01.20.>

④지도자는 원칙적으로 타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, 장애인체육 유관단체(경기단체, 시도장애인체육회 등)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.<개정 '22.01.20.>

⑤지도자의 세부적인 복무에 관한 규정(징계 규정 포함)은 해당 경기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에서 상호 협조하여 별도로 정하고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는다.<개정 '23.01.20.>

⑥지도자는 계약기간 중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그 직무를 정지한다.

⑦지도자는 계약 기간 중 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단체, 시도장애인체육회 등에서 시행하는 성범죄 및 폭력 관련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.<개정 '22.01.20.>

제10조(급여) 지도자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
1. 급여의 지급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 한다.
2. 급여의 지급 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3. 급여의 지급일은 경기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규정에 준한다.<개정 '23.01.20.>

제11조(복리후생) 기초종목 지도자 활동에 관한 각종 복리후생비(각종 수당, 교통비 등)는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경기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.<개정 '23.01.20.>

제12조(근무시간 및 근태) 근무시간은 해당 경기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복무

규정에 준한다.<개정 '23.01.20.>

제13조(월별 업무추진 실적 및 월별 훈련 계획) ①지도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월별 업무추진실적을 익월 10일까지, 월별 훈련 계획은 전월 25일까지 소속 경기단체 사무국 및 시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에 제출하여야 하고, 장애인체육회에서 개최하는 월 보고회, 교육 등에 참석하여야 한다. <개정 '23.01.20.>

②경기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월별 업무추진 실적과 월별 훈련 계획을 검토하여 즉시 장애인체육회에 문서로 제출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'23.01.20.>

*보고 양식 별지 참조

제14조(포상) 지도자의 직무에 현저한 업적이 있거나 업무 성적이 우수한 경우, 경기단체장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장과 장애인체육회장은 포상 할 수 있다. <개정 '23.01.20.>

제15조(성과평가) 이 지침을 시행함에 있어 지도자에 대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지침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별도로 정하며,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.<개정 '23.01.20.>

1. 경기단체와 시도장애인체육회가 공동 참여하는 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상호 협력한 사항<신설 '23.01.20.>
2.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실시에 대한, 경기단체와 시도장애인체육회 간 상호 평가 및 협력 관련 사항<신설 '23.01.20.>
3. 지도자 평가 시 복무, 업무실적, 선수 발굴·선발(평가)·지도 육성 등에 대한 사항 <신설 '23.01.20.>

제16조(기초종목육성 지도자 관리지침의 제·개정) ①기초종목 지도자 배치 경기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는 이 지침을 준용하여 기초종목육성 지도자 관리지침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. <개정 '23.01.20.>

②경기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의 기초종목육성 지도자 관리지침에 반드시 지도자 채용, 관리, 평가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 <개정 '23.01.20.>

③경기단체 및 시도장애인체육회에서 제·개정된 기초종목육성 지도자 관리지침은 제·개정 후 즉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 <개정 '23.01.20.>

부 칙('21 .01. 29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이 지침 제4조에 대하여, 지침 제정 이전 채용된 매니저는 기초종목 지도자로 전환하여 고용을 승계하되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만료된 것으로 한다.

②제4조 제1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③제4조 제3호에 관한 사항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부 칙(신설 '23. 01. 20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